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여야 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그 이자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액,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을 위한 “정기예금 이자율”: 연 1천분의 25
2.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을 위한 “요율”: 연 1천분의 25
3.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을 위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 연 1천분의 31

제3조 중 “2025. 7. 1부터 2026. 6. 30”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로 한다.